

Deloitte Newsletter



2013 년 12 월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관세청, 기업환경평가 통관행정(국제교역)부문 5년 연속 1위 차지

관세청은 10 월 30 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세계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평가에서 대(大) 인구국(인구 1300 만 이상 63 개국) 중 우리나라가 5 년 연속 1 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그룹인 주요 20 개 나라(G20) 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1 위를 차지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수출로 확인된 글로벌관세행정 선도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출입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는 카자흐스탄 등 8 개 나라에 팔려 1 억 148 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국제무대에서 관세행정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부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수출입 소요시간·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관세청, FIU 정보 적극 활용으로 관세탈루 등 단속 강화

지난 8 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FIU 법이 11 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새롭게 입수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세 탈루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2013 년에는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8 월까지 2,600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입수되는 FIU 정보를 정밀 분석해 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지급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수령하고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고액 채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의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세법개정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심사 '즉시착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규정함
- 처분위원회 심의사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도 심의토록 규정함

□ 법인심사 선정업체 분기별 통보 및 중복규정 삭제

- 심사정책방향에 따라 법인심사 선정업체 통보시점 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분기별' 통보 규정을 삭제(제 27 조)하고 제 37 조(심사착수 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연기 절차를 중복으로 삭제함

□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지침」 시행('13.8.6)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서류 제출을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 거래가격 부인, 심사기간 연장 및 중지, 과태료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외뿐만 아니라 통관단계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규정함 (수입물품 P/L 정지, 검사비율 상향 등)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주요 개정 내용

- 업체 자율점검 부담 완화(제 16 조)
-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제 5 조)
-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서식 개정(별지 제 5 호, 제 6 호)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정비(제 10 조 및 제 11 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주요 개정 내용

-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신설·보완
- 세관장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 현행 협정·규정 및 절차에 맞게 고시내용 수정
- 민원 권리강화를 위한 각종 신청서식 보완
- 도자제 주방용품(그릇, 접시)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변경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일인 11월 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매출액 범위를 현행 매출액 3 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 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매출액 3 천억원에서 5 천억원 사이의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4 년부터 적용됩니다.

[Tax 판례]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손금산입 가능 (대법원 2011 두 12917 판결)

대법원은 법인의 설립이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라도 그 법인의 설립목적과 설립 후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이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동화전문화사인 A 법인은 설립 전에 설립 직후 매입하게 될 빌딩의 매매와 관련하여 재무자문 및 법률자문 등을 받고, 설립 후에 이를 각각 재무자문용역비, 법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은 A 법인의 설립 전에 이루어진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A 법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용역은 모두 유동화 자산의 취득, 유동화 증권 발행 등 A 법인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용역비용이 설립 전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원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손금산입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이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법 제 19 조 제 2 항에 규정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의 적용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Tax 판례] 퇴직연금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 60 조 제 2 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퇴직급여추계액 기준)는 일시 퇴직 기준 금액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일시퇴직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연금제도 미가입 종업원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연금제도 미가입자 전원이 일시퇴직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을 추가로 고려하여 한도액을 산출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ax 판례] 지점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 2013-456, 2013.10.31)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9 조 제 1 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유형과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기존에 유권해석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지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서 그 여부가 명확해졌으며, 지점간 용역거래가 빈번한 고객들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 본격 추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FTA 체결의 확대로, 대기업(수출자)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출자의 경우도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제조원가 관련사항으로 기업비밀 유출 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세관장은 발급된 확인서가 FTA 특례법령과 협정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심사 및 확인하여,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 증빙 부담과 기업정보 유출 우려를 덜어 주고,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관세청 「FTA 포털 시스템」 대폭 개편

관세청은 기업들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찾을 때 많이 이용하는 정부 사이트인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을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개인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마이메뉴(my menu) 기능, 원산지 검증 등 국내유일의 콘텐츠 추가, 통합검색 기능 업그레이드,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FTA 포털」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개선요구’ 등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일감몰아주기 과세 수출중소 제외 추진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간접적인 형태로 수출에 나서면서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외 판매망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과세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7~9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